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198 발의연월일: 2024. 12. 4.

발 의 자:김형동·조지연·안철수

김소희・우재준・강명구

유용원 · 임이자 · 고동진

김예지 · 김기웅 · 김위상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음. 그러나,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병원진료 동행, 출산준비 등 임신한 배우자와 태아 돌봄을 위해 휴가 사용이 필요함.

이에, 배우자 출산휴가를 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기간에 대한 남성의 돌봄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(안제18조의2).

법률 제 호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제1항 전단 중 "출산을"을 "임신 및 출산을"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"배우자가"를 "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, 배우자가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
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	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	
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<u>출</u>	<u>임</u>	
<u>산을</u> 이유로 휴가(이하 "배우자	<u>신 및 출산을</u>	
출산휴가"라 한다)를 청구하는		
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		
한다.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		
은 유급으로 한다.	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
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	③	
<u>배우자가</u> 출산한 날부터 90일이	배우자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	
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.	사용할 수 있고, 배우자가	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	
<u><신 설></u>	⑥ 배우자 출산휴가의 신청방법	
	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	
	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	